

무배당 내게 필요한 보장만 모아모아 보험

보장성 상품



라이프플랜에 따라 내가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맞춤 보장 보험

무배당 내게 필요한 보장만 모아모아 보험

1.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 암 진단 시 일시금 지급과 더불어 최대 5년간 생활비 매일 지급

- ※ 통계청, 2018 사망원인 통계
-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 M/ (무)암진단특약 M 가입 시, 최초 진단 후 생존 시 매일 생활비 지급
- ※ 2년미만 50%지급, 일반암 및 특장암의 경우 91일 이후부터 보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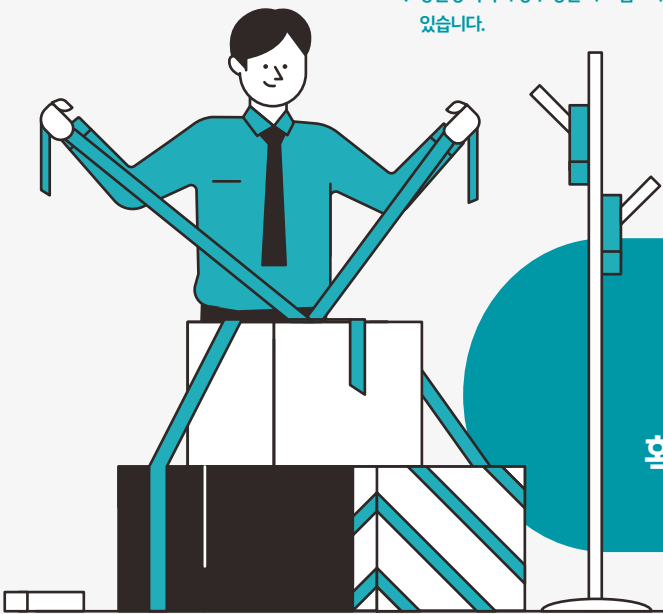
질병/재해 모두 첫날부터 보장 받는 입원비 보험, 상급 종합병원 집중치료실 입원 시 매일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 (10일 한도)

-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가입시
-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 2년미만 50% 지급
-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0구좌 가입시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경제활동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한 가족들을 위한 플랜, 매일 생활비 보장으로 든든하게 준비

-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하는 사망보장, 보험기간동안 매일 생활비 지급 (가계부채 상환 또는 자녀교육자금 마련)
- ※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가입 시



필요한 보장을
필요한 기간동안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가입안내

1. 보험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 내게 필요한 보장만 모아모아 보험	순수보장형

2. 부가가능특약

(무)암진단특약M,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무)재해장해생활비 특약M,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II(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65세 만기	20년납	만15 ~ 45세	월납,
	65세납	만15 ~ 50세	2개월납, 3개월납,
100세 만기	20년납	만15 ~ 60세	6개월납,
	65세납	만15 ~ 50세	연납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주계약 10,000만원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0,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가특약 보장내용

기준 I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10,000만원,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100구좌, (무)암진단특약M 100구좌,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30구좌,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50구좌,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20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III(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1구좌

구분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월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매월 100만원 지급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매월 150만원 지급 (월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무)재해장해 생활비특약M	재해장해 생활자금 I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매월 100만원 지급 (재해장해생활자금 I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확정 지급)
	재해장해 생활자금 II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100만원 지급 (재해장해생활자금 II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확정 지급)
(무)암진단특약M	일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 2년 미만: 500만원 계약일부 2년 이후: 1,000만원
	특정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 2년 미만: 100만원 계약일부 2년 이후: 2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 2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 2년 이후: 100만원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 2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 2년 이후: 100만원

구분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100만원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일반암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2년 미만: 1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300만원
	일반암 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일반암진단 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2년(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 하고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매월 일반암생활 자금 지급해당일에 확정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일반암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3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2대질병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50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500만원
	2대질병 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2대질병진단확정 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 아있을 경우,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2년 (24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2대질병진단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 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 연도에 대하 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매월 2대질병 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확정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2년 미만: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25만원 계약일부터 2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5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질병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상급종합병 원 질병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집중치료실 질병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재해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상급종합병 원 재해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8만원
	집중치료실 재해입원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
(무)뉴 수술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 2종: 30만원 / 3종: 50만원 / 4종: 100만원 / 5종: 3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 지급)
(무)뉴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II(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0만원
	중증치매 간병생활 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중증치매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3년(36개 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 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중증 치매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매월 중증치 매간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확정지급합니다.	매월 1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종신까지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급여금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무)암진단특약M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일반암”의 정의에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제외되므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일반암진단확정일은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일반암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일반암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2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암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4개월분의 일반암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 또는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일반암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일반암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반암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일반암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일반암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에서 2대질병진단확정일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2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2대질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4개월분의 2대질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 또는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2대질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
-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집중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재해입원급여금 및 집중치료실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사망 당시의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사망 당시의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1~5종 수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에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사망 당시의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중증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란 CDR척도검사 결과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중증치매진단확정일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3년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또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종신으로 합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에서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갱신시 유의사항 및 제한 사유(갱신형 특약에 한함)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갱신되는 특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최대 100세, 다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은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특약소멸 사유 발생시, 갱신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I [65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10,000만원,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10,000만원,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100구좌

연령	남자	여자
35세	87,200	50,600
40세	86,200	47,600
45세	84,100	43,600

기준 I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100만원, (무)암진단특약M 100구좌,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30구좌,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 5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II(갱신형) 2형 1구좌

연령	남자	여자
45세	93,524	68,597
50세	104,487	74,375
55세	114,824	77,781

- 갱신형특약의 경우 최초 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최대 100세, 다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갱신형)은 최대 90세) 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65세 만기, 20년납, 월납, 40세] 주계약 10,000만원, (무)플러스 수입보장특약M 10,000만원, (무)재해장해생활비특약M 100구좌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개월	258,600	142,800	0	0	0.0%	0.0%
6개월	517,200	285,600	0	0	0.0%	0.0%
9개월	775,800	428,400	0	0	0.0%	0.0%
1년	1,034,400	571,200	0	0	0.0%	0.0%
2년	2,068,800	1,142,400	0	0	0.0%	0.0%
3년	3,103,200	1,713,600	146,100	3,000	4.7%	0.1%
5년	5,172,000	2,856,000	1,325,800	201,200	25.6%	7.0%
10년	10,344,000	5,712,000	3,375,400	1,112,100	32.6%	19.4%
15년	15,516,000	8,568,000	4,088,700	1,449,500	26.3%	16.9%
20년	20,688,000	11,424,000	4,258,200	1,774,500	20.5%	15.5%
25년	20,688,000	11,424,000	0	0	0.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 45세] 주계약 100만원, (무)암진단특약M 100구좌,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 30구좌, (무)2대 질병 생활자금특약M 50구좌
 [최초계약, 10년 만기, 전기월납, 45세] (무)뉴 첫날부터 질병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첫날부터 재해입원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수술특약(갱신형) 2형 20구좌,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II(갱신형) 2형 1구좌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개월	280,572	205,791	0	0	0.0%	0.0%
6개월	561,144	411,582	8	41	0.0%	0.0%
9개월	841,716	617,373	54	265	0.0%	0.0%
1년	1,122,288	823,164	100	488	0.0%	0.0%
2년	2,244,576	1,646,328	571,568	347,208	25.4%	21.0%
3년	3,366,864	2,469,492	1,232,670	787,541	36.6%	31.8%
5년	5,611,440	4,115,820	2,549,903	1,665,901	45.4%	40.4%
10년	11,222,880	8,231,640	5,345,670	3,453,040	47.6%	41.9%
15년	15,928,080	11,281,440	8,034,880	5,229,470	50.4%	46.3%
20년	20,633,280	14,331,240	10,825,470	7,089,960	52.4%	49.4%
30년	20,633,280	14,331,240	9,503,960	6,355,430	46.0%	44.3%
40년	20,633,280	14,331,240	6,584,030	4,350,200	31.9%	30.3%
50년	20,633,280	14,331,240	3,488,510	2,237,940	16.9%	15.6%
55년	20,633,280	14,331,240	0	0	0.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암진단특약M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암진단특약M의 일반암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일반암 생활자금특약M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2대질병 생활자금특약M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II(갱신형) 2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무)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II(갱신형) 2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1.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6.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7.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8.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12.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3.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년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AIA 생명 고객센터]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내]

- 부산 (051) 606-1701
- 대구 (053) 760-4000
- 광주 (062) 606-1600
- 대전 (042) 479-515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전화] 1588-3311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생명보험협회]

- 본부 : 02) 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 2262-6552, 6572, 6573
- 중부지역본부 : 042) 242-7002~4
- 호남지역본부 : 062) 350-0111~4
- 영남지역본부 : 051) 638-7801~4
- 대구지부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 원주지부 : 033) 761-9672~3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 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 (당사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공시]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AIA생명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 TOWER

고객센터 1588-9898 / DMD-Q0535 / COM-2020-12-33044 | 제작일자 : 2021.01